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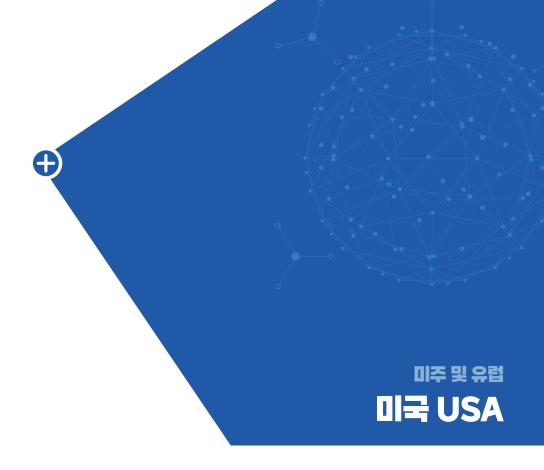








2024년 한눈에 보이는 **미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_ 169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_ 185

03. 비관세장벽 현황_ 193

04. 수출 애로사항_ 210

05. 현지화 자문보고서_ 213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2) 01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3년 전체 식품 시장규모는 7,707억 달러(한화 약 1,132조 9,290억 원)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이 비교적 큰 시장규모를 형성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4.144억 달러(한화 약 609조 1.680억 위)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53.8%를 차지함.
 - * 육류 시장이 규모 1,251억 달러(한화 약 183조 8,970억 원)로 가장 높은 16.2%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낙농품(12.8%), 채소류(11.6%), 과일 및 견과류(11.0%)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전체 시장의 46.2%에 해당하는 3,563억 달러(한화 약 523조 7.610억 원)를 기록했으며 스낵류,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비중이 높음
 - * 스낵류가 규모 1,291억 달러(한화 약 189조 7,770억 원)로 가공식품 시장의 1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되었고,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9.1%), 펫푸드(7.4%), 편의식품(6.5%) 순임

표 1. 식품 시장규모(2019~2023)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38.7	664.0	688.9	740.2	770.7	100.0	4.1
신선식품	350.4	361.4	371.5	398.2	414.4	53.8	4.1
- 육류	109.4	112.1	114.9	120.8	125.1	16.2	3.6
- 낙농품	82.0	85.0	87.5	94.3	98.7	12.8	4.7
- 채소류	73.4	75.9	78.1	86.0	89.7	11.6	4.3
- 과일 및 견과류	71.4	73.8	76.0	81.5	84.6	11.0	3.8
- 유지류	14.2	14.6	15.0	15.6	16.3	2.1	4.5
가공식품	288.3	302.6	317.4	342.0	356.3	46.2	4.2
- 스낵류	109.5	111.6	117.5	124.9	129.1	16.8	3.4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60.0	61.6	63.0	67.5	69.9	9.1	3.6
- 펫푸드	34.2	42.1	46.9	53.0	57.4	7.4	8.3
- 편의식품	42.4	43.8	45.1	48.6	50.1	6.5	3.1
- 소스 및 향신료	25.4	26.2	27.0	29.0	29.9	3.9	3.1
- 스프레드 및 당류	9.5	9.7	10.0	10.9	11.4	1.5	4.6
- 영유아용 식품	7.3	7.6	7.9	8.1	8.5	1.1	4.9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¹⁾ 환율: 1달러=1.470.00원(2025년 1월 2일, 매매기준율 기준)

^{2) &#}x27;23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3억 4.350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4.5% 증가함
 - 55세 이상 중장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9.9% 수준이며, 다른 연령층은 약 12~18%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여 균등한 편임
 - 여성 인구 수는 약 1억 7,090만 명(49.8%), 남성 인구 수는 약 1억 7,260만 명 (50.2%)으로 전년과 다르게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비중이 증가함
- 2023년 가구 수는 1억 3,590만 가구이며, 1인당 연간 평균 5만 4,100달러(한화 약 7,953만 원)를 지축한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중 식품에 소비하는 금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함
- 2023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266.8달러(한화 333만 원)로 전년보다 3.6% 증가했으며, 시선식품이 가공식품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모든 주요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품목에서 전년 대비 소비액이 증가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1,218.9달러(한화 약 176만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식품에 대한 지출의 53.8%를 차지함
 - * 육류가 16.2%의 비중으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 낙농품(12.8%), 채소류(11.6%) 순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1,047.9달러(한화 약 154만 원)로 집계되어 전체 식품 소비액의 46.2%를 차지함
 - * 스낵류의 비중이 16.8%로 가장 크며, 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9.1%), 펫푸드(7.4%) 순임

표 2. 1인당 식품 소비액(2019~2023) (단위: 달러, %) 전년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1,975.8 2,043.6 2,188.5 2,266.8 전체 1,910.7 100.0 3.6 신선식품 1.048.5 1.075.5 1.102.2 1.177.5 1.218.9 53.8 3.5 - 육류 327.3 333.5 340.8 357.2 368.0 16.2 3.0 278.9 253.1 259.6 290.3 12.8 4.1 - 낙농품 245.4 219.7 225.8 231.8 254.3 263.9 11.6 3.8 - 채소류 - 과일 및 견과류 213.7 219.7 225.6 240.9 248.7 11.0 3.2 42.4 46.2 2.1 3.9 - 유지류 43.4 44.4 48.0 862.2 900.3 941.4 1,011.0 1,047.9 46.2 3.6 가공식품 - 스낵류 327.5 332.1 348.6 369.2 379.8 16.8 2.9 9.1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79.5 183.3 186.8 199.6 205.6 3.0 - 펫푸드 102.2 125.2 139.2 156.8 168.8 7.4 - 편의식품 126.9 130.3 133.7 143.6 147.3 6.5 2.6 78.0 85.7 2.7 - 소스 및 향신료 76.0 0.08 88.0 3.9 - 스프레드 및 당류 28.3 28.8 29.7 32.1 33.5 1.5 4.4 24.0 24.9 3.7 21.8 22.6 23.4 1.1 - 영유아용 식품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2023년 기준 신선식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 또는 유지한 수준임. 주요 품목 중 낙농품이 소비량 123.7kg, 증감률 1.5%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감함
 - * 이어서 채소류 소비량은 75.2kg, 과일 및 견과류 51.5kg, 육류 31.9kg, 유지류 11.6kg이 소비됨
- 가공식품 주요 품목 중에서는 소비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펫푸드의 성장이 눈에 띄며, 이외 대부분의 품목은 미미하게 증감함. 편의식품은 전체 소비량 상위 품목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0.6% 하락함
- *가장 소비량이 많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소비량은 50.0kg이며, 그다음으로 펫푸드 47.9kg, 스낵류 44.8kg, 편의식품 17.4kg, 소스 및 향신료 13.7kg 순임

∄3.	표 3. 1인당 식품 소비량(2019~2023) (단위: 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증감률	
	- 낙농품	120.9	122.4	122.3	121.9	123.7	1.5	
	- 채소류	73.1	72.8	72.2	74.3	75.2	1.2	
신선 식품	- 과일 및 견과류	52.0	51.8	51.1	51.2	51.5	0.6	
	- 육류	32.8	32.7	32.4	31.8	31.9	0.3	
	- 유지류	12.0	12.1	12.1	11.6	11.6	0.0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0.4	50.6	50.4	49.9	50.0	0.2	
	- 펫푸드	38.6	43.8	43.7	45.7	47.9	4.8	
	- 스낵류	44.3	44.2	45.0	44.8	44.8	0.0	
가공 식품	- 편의식품	17.5	17.6	17.5	17.5	17.4	-0.6	
	- 소스 및 향신료	13.7	13.8	13.8	13.7	13.7	0.0	
	- 스프레드 및 당류	9.3	9.5	9.7	9.8	10.0	2.0	
	- 영유아용 식품	1.0	1.0	1.1	1.1	1.1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3년 농림축산식품 수출규모는 1,802억 3,427만 4,000달러(한화 약 264조 9444억 원)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함
 - 캐나다로의 수출 비중이 18.0%로 가장 크며, 중국과 멕시코가 16.2%로 동일함. 그다음 일본(6.6%), 한국(4.2%), 콜롬비아(2.1%) 순임
 - * 對개나다 수출액은 323억 6,643만 6,000달러(한화 약 47조 5,787억 원)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5.7% 성장함
 - * 對중국 수출액은 292억 2,503만 9,000달러(한화 약 42조 9,755억 원)로 전년 대비 23.6% 감소했으나,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20.4%로 증가세를 보임
 - * 對멕시코 수출액은 291억 2,085만 6,000달러(한화 약 42조 8,077억 원)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10.2%씩 성장함
 - 對한국 수출액은 75억 4,422만 1,000달러(한화 약 11조 900억 원)로 기록되며, 이는 전년보다 20.7% 감소한 수준임

(단위: 천 달러. %)

	교 4. 국기를 6 국업 구출한경(2013·2023)								
							비중	증감	각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46,159,157	154,172,236	180,825,663	200,808,720	180,234,274	100.0	-10.2	5.4
1	캐나다	25,949,244	25,648,975	29,059,493	32,524,518	32,366,436	18.0	-0.5	5.7
2	중국	13,912,296	26,488,680	32,865,320	38,247,949	29,235,039	16.2	-23.6	20.4
3	멕시코	19,711,678	18,620,897	25,698,069	28,717,992	29,120,856	16.2	1.4	10.2
4	일본	12,031,143	11,699,374	14,170,577	14,576,174	11,894,221	6.6	-18.4	-0.3
5	한국	7,788,041	7,752,132	9,365,777	9,516,604	7,544,221	4.2	-20.7	-0.8
6	콜롬비아	2,778,921	2,856,316	3,379,028	3,719,905	3,707,544	2.1	-0.3	7.5
7	대만	3,613,540	3,298,944	3,858,391	4,353,976	3,678,614	2.0	-15.5	0.4
8	필리핀	2,989,839	3,200,244	3,549,706	4,052,031	3,612,585	2.0	-10.8	4.8
9	베트남	3,575,561	3,375,993	3,466,430	3,541,706	3,156,426	1.8	-10.9	-3.1
10	네덜란드	3,039,504	3,358,044	2,644,014	2,854,196	3,061,274	1.7	7.3	0.2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4 국가벽 농신품 수축혀화(2019~2023)

-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 대두(15.5%)이며 이외 곡류, 조제식료품, 육류 등이 수출규모 순위 상위권에 위치함, 순위에 오른 품목 중 대두유 추출 유박과 신선 냉장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보다 수출규모가 다소 감소함
 - * 기타 대두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8% 감소한 279억 4.364만 달러(한화 약 40조 722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15.5%를 차지함
 - * 기타 옥수수의 수출액은 132억 9,902만 4,000달러(한화 약 19조 5,495억 원)로 전년 대비 29.0% 감소했으며, 전체 수출의 7.4%를 차지함
 - * 뒤이어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동일하게 각각 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밀, 대두유 추출 유박, 조제식료품 등이 있음

표 5.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려, %)

				2020 2021			ui즈	증감	남률
	구분	2019	2020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46,159,157	154,172,236	180,825,663	200,808,720	180,234,274	100.0	-10.2	5.4
1	대두 (기타)	18,693,793	25,524,781	27,403,626	34,395,077	27,943,640	15.5	-18.8	10.6
2	옥수수 (기타)	7,773,589	9,306,892	18,749,814	18,740,891	13,299,024	7.4	-29.0	14.4
3	밀(기타)	6,057,968	6,096,728	7,133,052	8,357,433	5,844,097	3.2	-30.1	-0.9
4	대두유 추출 유박	3,387,509	3,635,156	4,443,157	5,082,592	5,726,021	3.2	12.7	14.0
5	조제 식료품	5,428,778	5,357,505	6,225,450	6,015,844	5,688,945	3.2	-5.4	1.2
6	신선 냉장 쇠고기	3,299,768	3,372,353	4,403,481	4,100,515	4,113,105	2.3	0.3	5.7
7	절단한 냉동 닭고기	2,655,894	2,783,933	3,384,697	4,023,025	3,545,794	2.0	-11.9	7.5
8	냉동 쇠고기	2,605,655	2,367,761	3,693,422	4,574,421	3,404,035	1.9	-25.6	6.9
9	박(양조, 증류)	2,227,849	2,328,819	2,984,979	3,383,308	3,304,791	1.8	-2.3	10.4
10	아몬드	3,687,769	3,425,593	3,370,080	3,297,706	2,922,820	1.6	-11.4	-5.6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3년 농식품 수입액은 2,061억 9,148만 2,000달러(한화 약 303조 1,015억 원)로 전년 대비 2.7% 감소함
 - 주요 수입국 중 멕시코 수입 비중이 22.7%로 가장 높고, 이어 캐나다(19.9%), 이탈리아(3.9%) 순임
 - * 멕시코 농식품 수입액은 467억 762만 6,000달러(한화 약 68조 6,602억 원)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5%의 증가세를 보임
 - * 캐나다 농식품의 수입액은 410억 3,845만 3,000달러(한화 약 60조 6,602억 원)로 나타나며, 전년 대비 7.4% 증가함
 - 한국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42억 7,099만 7,000달러(한화 약 2조 1,861억 원)로, 전년 대비 1.9%, 연평균 12.5%의 증가세를 보이나 수입 비중은 0.7%에 불과함

표 6.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비중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ਪਤ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49,841,428	154,870,198	181,670,333	211,935,545	206,191,482	100.0	-2.7	8.3
1	멕시코	31,274,041	33,988,665	39,117,337	44,554,183	46,707,626	22.7	4.8	10.5
2	캐나다	25,122,034	26,016,139	32,287,738	38,215,915	41,038,453	19.9	7.4	13.1
3	이탈리아	5,769,261	5,926,708	7,027,145	8,010,179	7,947,491	3.9	-0.8	8.3
4	프랑스	6,904,441	6,237,342	7,998,774	8,713,900	7,049,261	3.4	-19.1	0.5
5	브라질	4,209,106	4,194,969	4,906,189	6,626,804	6,516,143	3.2	-1.7	11.5
6	중국	4,420,947	4,391,269	4,971,869	5,962,729	5,336,726	2.6	-10.5	4.8
7	인도네시아	2,865,408	2,969,372	4,470,606	5,854,687	4,677,516	2.3	-20.1	13.0
8	호주	3,664,305	3,514,424	3,695,237	4,517,437	4,617,487	2.2	2.2	6.0
9	콜롬비아	2,942,183	2,992,438	3,710,405	4,733,903	4,371,742	2.1	-7.7	10.4
10	페루	2,899,367	3,208,138	3,450,271	4,480,808	4,270,997	2.1	-4.7	10.2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상위 품목은 맥주, 기타 빵, 조제식료품, 볶지 않은 커피 등이 있으며, 육류와 토마토 같은 신선식품도 포함됨
 - * 맥주 수출액은 71억 3,847만 8,000달러(한화 약 10조 4,930억 원)로 전년 대비 1.3% 증가함
 - * 기타 빵의 수출액은 70억 8,536만 9,000달러(한화 약 0조 4,155억 원)로 전년 대비 9.4% 증기했으며,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함
 - * 이어서 조제식료품(3.3%), 볶지 않은 커피(2.8%), 기타 주정음료(2.4%) 등의 수입 비중이 높음

丑	표 7.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ui조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49,841,428	154,870,198	181,670,333	211,935,545	206,191,482	100.0	-2.7	8.3
1	맥주	5,843,851	5,977,170	6,624,655	7,050,111	7,138,478	3.5	1.3	5.1
2	빵(기타)	3,934,369	4,212,368	5,126,141	6,477,529	7,085,369	3.4	9.4	15.8
3	조제식료품	5,826,461	6,386,648	7,171,392	8,090,713	6,824,395	3.3	-15.7	4.0
4	볶지 않은 커피	4,384,263	4,210,140	4,944,882	7,371,392	5,673,081	2.8	-23.0	6.7
5	주정음료(기타)	1,972,337	2,784,295	3,944,287	5,322,991	5,034,202	2.4	-5.4	26.4
6	포도주 (2L 이하)	4,706,025	4,209,152	5,008,765	5,165,548	4,883,193	2.4	-5.5	0.9
7	신선·냉장 쇠고기	2,838,602	3,001,432	3,960,325	3,956,622	4,327,266	2.1	9.4	11.1
8	유채유(기타)	1,351,044	1,360,041	2,323,718	3,083,185	3,457,551	1.7	12.1	26.5
9	신선 토마토	2,390,594	2,918,067	2,911,523	2,998,594	3,279,274	1.6	9.4	8.2
10	냉동 쇠고기	2,119,546	2,655,217	2,593,376	2,979,317	3,167,448	1.5	6.3	10.6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한국의 對미국 농식품 수출현황

-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최근 5개년 간 연평균 10.7%씩 성장하며 2023년에 13억 1,383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9,313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규모임
- 전체 수출액 비중의 88.4%를 농산물이 차지하며 축산물, 임산물 순으로 뒤따름
 - * 2023년 농산물 수출액은 11억 6,115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7,069억 원)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하였고,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12.0% 성장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표 8. 한국의 對미국 수출 규모(2019~2023)

(단위 : 천 달러, %)

				2022	2023	비중 ('23)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874,218	1,206,184	1,263,486	1,208,433	1,313,833	100.0%	8.7	10.7
농산물	739,118	1,036,834	1,080,108	1,015,819	1,161,159	88.4%	14.3	12.0
축산물	57,949	66,038	70,287	70,041	105,660	8.0%	50.9	16.2
임산물	77,151	103,312	113,091	122,573	47,014	3.6%	-61.6	-11.6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은 가공식품으로 조미김, 라면, 기타 무알코올 음료, 찌거나 삶은 쌀, 베이커리 제품 등이 있음
 - * 조미김의 수출액은 1억 5,802만 달러(한화 약 2,323억 원)로 전년 대비 9.1% 신장함
 - * 라면 수출액은 1억 2,658만 8,000달러(한화 약 1,861억 원)로, 전년 대비 66.2% 증가해 상위 5개 품목 중 가장 많이 성장함
 - *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조미김(51.6%)으로 집계됨

표 9. 한국의 對미국 수출 상위 5개 품목(2019~2023)

(단위: 천 달러, %)

			2000				비중 ('23)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171,342	1,519,797	1,656,639	1,632,559	1,740,135	100.0	6.6	10.4
1	조미김	29,936	128,219	144,702	137,285	158,020	9.1	15.1	51.6
2	라면	53,543	82,265	81,226	76,161	126,588	7.3	66.2	24.0
3	기타 무알코올 음료	69,256	72,745	71,134	73,776	70,712	4.1	-4.2	0.5
4	찌거나 삶은 쌀	15,497	27,479	35,934	51,797	65,415	3.8	26.3	43.3
5	베이커리 제품	23,011	31,491	36,762	34,142	53,172	3.1	55.7	23.3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FDA 시설등록	미국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생산·가공·보관업체는 미국 FDA에 시설등록 필수 미국 FDA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해외 생산기업의 경우 미국 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시설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매 짝수년도에 갱신할 수 있음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적하목록 사전제출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적하목록 제출 ・제출정보: 화물에 대한 정보, 송하인 및 수하인 인적정보, 운송수단 및 항해에 관한 정보 등 	
PNSI· ISF 제출	[PNSI, 수입식품 사전통지] • 수입식품은 화물 도착 15일 전부터 '수입식품 사전통지(PNSI)' 제출 가능 • 제출정보: 도착항, 담당자 정보, 수출입업체 정보, 제품 정보 등 [ISF, 수입자 보안신고] • 관세국경보호청에 화물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 보안신고(ISF)' 제출 필요 • 미국 수입업체와 운송업체는 각각 10개, 2개 정보를 제출함	미국 운송·수입 업체
수입물품 신고	• 도착 후 15일 이내 통관자동화시스템(AMS)을 통해 수입신고 진행 • 제출서류: ① 적하목록 ② 수입신고서 ③ 통관권리증명서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등	
수입검사	• 미국 FDA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① 현장검사 ② 라벨검사 ③ 샘플검사 실시 여부 결정 • ① 현장검사: ① 서류 및 수입화물 간의 일치 ② 운송·보관 중 발생한 손상 ③ 보관 온도 ④ 부패 여부 등 검사 • ② 샘플검사: 제품의 공중보건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 • ③ 라벨검사: 라벨링 규정의 표시 항목 및 요건 준수 여부	미국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 추정관세 납부 후 물품을 반출하며, 추후 관세 과부족분을 납부	

▶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생산·가공·보관업체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식품 생산가공시설 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필수 - 미 FDA가 운영하는 'FIS(FDA Industry Systems)'을 통해 온라인 등록할 수 있음 → FIS 홈페이지 URL: www.access.fda.gov 〈미국 FDA 생산가공시설등록 정보〉
시설 등록	①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② FDA가 인정하는 시설의 고유시설식별번호(UFI) / DUNS Number ③ 우편 희망 주소(시설의 주소와 다른 경우) ④ 모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해당하는 경우) ⑤ 미국 내 에이전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⑥ 비상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⑦ 시설을 담당하는 소유주 운영자 혹은 에이전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⑧ 시설이 사용하는 모든 상표명 ⑨ 등록 서식에 적혀 있는 해당하는 식품 카테고리 ⑩ 해당하는 각 식품 카테고리에 대한 시설에서 수행된 활동 유형 ① FDA의 시설 점검을 허가할 것이라는 보증 ② 제출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자의 기재 권한을 허가한다는 증명서
	- (등록) 2~4주 소요 / 해외 식품 시설은 미국 대리인(FDA US Agent) 필요 및 미국 대리인의 확인 후 등록됨, 대리인이 FFR 등록신청도 가능 - (갱신) 2년 주기로 갱신 필요(매 짝수년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갱신 가능) - (수정) 등록의 필수 정보가 변경된 경우 60일 이내에 FDA에 업데이트 필요 - 모든 외국 식품 시설은 미국 FDA 대리인(US Agent)이 있어야 함 - 산성 및 저산성 식품은 제조시설등록(FCE) 및 제품별 제조공정등록(SID)을 필수적으로 요구
라벨 사전심사	• 국내 주류 수출업체는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에 주류 제품 라벨의 사전심사 후 라벨승인증서를 취득 필요 - 미국 '연방알콜관리법'에 따라, 미국 내 유통·판매되는 와인, 맥주 등의 주류는 라벨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라벨승인증서(COLA, Certificate of Label Approval)'를 취득해야 함 - 또한, 주류담배세금무역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벨링 규정에 따라 식품 라벨을 표시해야 함 - 라벨승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벨 사전심사	(라벨승인증서 취득 시 제출 서류) ① 비용에 대한 보증 채권 ② 사업자 등록증 ③ 계약 서류				
	④ 생산공장에 대한 정보 ⑤ 신청자에 대한 위임서류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 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 미국 수출 시 한-미 FTA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				

▶ 국내 수<u>출통</u>관 절차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접수 결과에 따라 ①서류 심사 후 수리 ②현품 검사 후 수리 ③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A = 11 -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수출신고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축산물검역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수출신고필증 ②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미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미국으로 △단감 △감귤·한라봉·천혜향 △딸기 △수박 △오이 △참외 △호박 △밤 △배 △사과 (후지) △파프리카 △포도 △토마토 △뿌리 달린 냉이 △당근 등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수출식물검사신청서 ② 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식물검역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출검역 ④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① 수출 검사신청서 축산물검역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 수출식물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검역의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운송수단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미국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미국 수입제도

• 미국은 상황에 따라 ①정식 통관(Formal) ②약식 통관(Informal) 제도를 운영

〈수출신고 수리 유형〉

- 인보이스 가격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 품목, 국가의 세입 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 정식통관(Formal Entry)이 요구됨 정식 통관 - 소비 통관(Consumption Entry)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부분에 적용되며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됨 - 항공, 해상 또는 우편 화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 중 2,500달러 미만의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가치(Value)의 품목 통관에 활용 가능함 - 식품 등 다른 미 정부 기관(미 식품의약국, 농림부 등)담당 및 규제가 약식 통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식통관이 불가능함 - 수입 시 검사가 필요한 농식품을 제외한 800달러 이하의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음

▶ 미국 수입통관·검역 절차

• 운송업체는 수입국 도착 전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에 제출 필수

- 화물에 대한 정보(품명, 상세설명, 선하증권 번호, 국제적 위험품코드 등), 송하인 및 수하인의 인적 정보(이름, 주소, 부여된 ID 등), 운송수단 및 항해에 대한 정보(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를 미국 화물전자신고시스템(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해 사전 제출해야 함

적하목록 사전제출

(미국 운송수단별 적하목록 제출기한)

도로운송	도착 1시간 전
철도운송	도착 4시간 전
해상운송	도착 8시간 전
항공운송	적재 2시간 전

• 운송업체·미국 수입업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화물 도착일 15일 이전부터 '수입 식품 사전통지'를 제출 필요 - 운송수단별 적하목록 제출기한을 준수해 화물 도착일 15일 이전부터 미국 도착 전까지 수입식품 사전통지를 제출해야 함 수입식품 - 미국 FDA의 PNSI(Prior Notice System Interface)을 통해 도착항, 담당자정보, 수출업체 사전통지 정보, 수입업체 정보, 제품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 (PNSI) - 예상 도착시간 이전에 제품이 도착항에 도착하는 경우, 사전 통지 기한이 경과하거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 또는 수입 거부될 수 있음 - 사전통지가 거부되거나 보류된 경우, 거부 또는 보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미국 FDA에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미국 수입업체와 운송업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입자 보안 신고 제출 필요 - 수입자 보안 신고(Importer Security Filing Requirement)에 따라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수입업체 및 운송업체는 관세국경보호청에 다음의 정보를 화물 선적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함 (ISF 식품업체 및 운송업체 제출 정보) 수입자 보안 신고 (ISF) ① 제조사 또는 공급자 ④ 수취인 ⑦ 수입자/FTZ 번호 수입자 ⑤ 컨테이너 적입장소 ⑧ 수하인 번호 ② 판매자 (소유주, 구매자, ③ 구매자 ⑥ 혼재업자 ⑨ 원산지 관세사, 대리인) 10 HS CODE 운송업체 ① 화물 적재 계획서 ②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 미국 수입업체는 도착항 도착 후 15일 이내 통관자동화시스템(AMS)을 통해 수입물품 신고 진행 필요 - 수입물품 신고시 수입신고서를 비롯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국 수인물품 신고 제출서류) ① 적하목록(CBP Form 7533) 수입신고 ② 물품신고서(CBP form 3461) ③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④ 상업송장(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 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⑥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 미국 식품의약국은 수입식품에 대해 ①현장검사 ②라벨검사 ③샘플검사를 진	미국 식품의약국은	수입식품에 다	해 ①현장검시	2라벨검사	③샘플검사를	진행
---	-----------	---------	---------	-------	--------	----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식품의약국에 전달한 수입업체의 사전통지내역 및 수입신고상의 정보를 토대로 식품 수입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함
- 수입식품으로 인해 식품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생산·유통·수입업체의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진행하며, 정기적으로도 수입검사를 실시함

(미국 식품의약국 수입검사 유형)

- ① 서류 및 수입화물간의 일치 ② 운송·보관중 발생한 손상 ③ 보관 온도 ④ 설치류·곤충의 침입 ⑤ 식용색소 등 식품첨가물 기준 준수 ⑥ 부패 ⑦ 수입서류 상의 의심스러운 사항 및 관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며, 국경검문소·창고·냉장시설 및 컨테이너 등에서 진행됨 - 현장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샘플검사를 통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정기적으로 수입식품의 샘플을 수집하며, 제품의 공중보건기준 충족 샘플검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식품의약국 실험실에서 정밀분석을 진행함 - ① 식품 라벨 상의 정보 및 실제 식품의 일치 여부 ② 식품명·원산지 등 라벨검사 라벨링 규정의 표시 항목 및 요건 준수 여부를 검사함

수입검사

- 농산물, 축산물, 유제품의 검사 및 검역은 미국 농무성(USDA) 산하의 동식물검역청(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 관할함
- 미국의 수입업자는 농산물의 수입에 앞서 미국 동식물검역청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축산물 수입업자 역시 수입에 앞서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며. 육류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업체 측에서 미국 식품의약국에 생산기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함
- 유제품 수입 시에도 동물검역소의 수입허가증이 필요함
-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규제는 미국 농무성 산하의 식품위생검사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담당하며, 이곳에 등록된 국가 및 시설에서 생산된 육류 및 가금류만 미국에 수입이 가능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미국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 납부
-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 낮은 관세(평균 약 4.2%)를 부과함
- 관세 산정에 필요한 상업송장 등의 제반서류 및 납세신고서(CBP Form 7501)를 제출해야 함
- 수입업체는 추정관세를 선제적으로 납부하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며 추후 확정된 관세액에 따라 초과·부족분을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함
- 수입업체는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조세, 각종 비용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 (Bonds)를 관세국경보호청에 제출해야 함
- 보증서(Bonds)는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사용함

● FTA 체결현황

표 10. 미국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발효)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표 11.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 중	재개개시 여건 조성
한-미 FTA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미국 본토)
 - 곡류 및 두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녹두, 팥, 대두
 - * 건조된 것에 한함
 - * 쌀의 경우, 왕겨(hull)가 혼입되어 있어서는 안 됨
 - 과실류: 감(단감), 감귤(한라봉, 천혜향 포함), 밤, 배, 참다래, 포도, 후지사과
 - * 수입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으로부터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함
 - * 감(단감), 감귤(한라봉, 천혜향 포함), 밤, 배, 참다래, 포도, 후지사과는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채소류: 가지, 고들빼기, 고추, 근대, 냉이, 딸기(수출가능시기: 9.15~5.31), 땅콩, 더덕, 도라지, 두름 [순(shoot)만 수출 가능], 들깻잎, 마늘, 무(지하부만 수출 가능), 미나리, 상추, 수박, 쑥, 생강, 시금치, 얌(Yam), 양갓냉이, 양파, 연근, 오이, 우엉, 참깻잎, 참외, 취나물, 토란, 파프리카, 호박, 호박잎, 토마토, 당근, 가공된 파속(Allium spp.) 식물
 - * 수입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으로부터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함
 - * 고추, 뿌리달린 냉이, 수박, 오이, 참외, 파프리카, 호박, 토마토, 당근은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 마늘: 껍질 벗긴 마늘(peeled clove) 또는 건조 구근(drv bulb)만 수출 가능
 - * 미나리 : 뿌리가 없는 상태의 미나리 잎과 줄기로 상업화물로 수춬하여야 함. 식물 검역 증명서 부기사항 확인
 - * 양파: 건조 구근(Drv bulb)만 수출 가능
 - * 가공된 파속(Allium spp.) 식물(bulb에 한함): 양파(Allium cepa), 샬롯(Allium cepa subsp. aggregatum), 염교(Allium chinense), 대파(Allium fistulosum), 리크(Allium porrum), 마늘(Allium sativum), 파(Allium schoenprasum), 부추(Allium tuberosum) 해당
 - * 가공 요건(하기 ①, ②, ③ 중 하나 충족): ① 1인치 이하(길이 기준)로 절단 ② 1인치 이하로 깍둑썰기(두께 기준) ③ 가공되지 않은 구근인 경우, 껍질을 벗겨야 함
 - * 가공된 파속 식물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특작류 : 수삼, 인삼
 - * 수삼의 경우, 수입허가(import permit)가 필요하며,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³⁾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 농림축산검역본부(2024), https://www.gia.go.kr/listWebOia3WGJYYO.do?clear=1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배추, 브로콜리,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 고추, 토마토 종자 : 바이로이드(viroid) 및 토마토 갈색주름과일바이러스(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관련 부기 필요
 - * 대부분의 초본 종자류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자류는 하기와 같음
 - 센크루스속(Cenchrus spp.), 키오나크네속(Chionachne spp.), 강냉이속(Coix spp.), 피속(Echinochloa spp.), 엘루신속 (Eleusine spp.), 유클라에나속(Euchlaena spp.), 목화속(Gossypium spp.), 미스칸투스속(Miscanthus spp.), 피수속 (Panicum spp.), 펜니세툼속(Pennisetum spp.), 폴리토카속(Polytoca spp.), 스클레라크네속(Sclerachne spp.), 기장속 (Setaria spp.), 수수속(Sorghum spp.), 트릴로바크네속(Trilobachne spp.), 트립사쿰속(Tripsacum spp.), 옥수수속(Zea spp.)
 - * 이 중 일부 속은 통제 수입 허가서(Controlled import permit)을 받아야 함
 - 소독처리가 요구되는 종자류: 아벨모스쿠스속(Abelmoschus spp.), 밤나무속(Castanea spp.), 귀조티아 아비스시니카 (Guizotia abyssinica), 히비스커스속(Hibiscus spp.), 비름속(Lathyrus spp.), 렌즈콩속(Lens spp.), 참나무속(Quercus spp.), 운항과(Rutaceae family), 브리카속(Vicia spp.)
 - 코팅 처리 등으로 인해 종자의 모양을 확인하기 어려운 초본 종자류
 - 목본 종자류
 - 소량 종자(Small lots of seeds)
- 버섯류: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글리디올러스,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호접란, 국화
 - * 국화절화는 조건부 요건(생산지 지정, 재배지검사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묘목, 구근류(재배매체 제거): 선인장, 호접란, 심비디움, 틸란디시아묘, 에케베리아묘 등
 - * 분재류의 경우, 하기의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12개 이하로 수출되는 묘(묘목)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CITES 품목 등). 격리재배식물,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금지식물류일 경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각재 등의 제재목 : 목재에 대한 수입허가 필요. 수피제거
- 농산물(괌, 사이판)
 - 곡류 및 두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녹두, 팥, 대두
 - * 건조된 것에 한함
 - * 쌀의 경우, 왕겨(hull)가 혼입되어 있어서는 안 됨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배, 사과, 참다래, 포도, 밤, 복숭아, 넥타린, 살구, 자두, 양벚, 비파(Loquat), 대추
 - * 수입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으로부터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함
 - * 밤의 경우, MB 훈증 없이 수출 가능

- 채소류: 가지, 감자, 강낭콩(garden bean, string bean / Phaseolus vulgaris), 고구마, 고들빼기, 고추, 근대, 냉이, 당근, 대황(Rhubarb), 딸기(수출 가능시기: 9.15~5.31), 땅콩, 더덕, 도라지, 두름 [순(shoot)만 수출 가능], 들깻잎, 마늘, 마쉬멜로우잎, 무(지하부만 수출 가능), 미나리, 배추, 상추, 샬롯, 셀러리, 수박, 쑥, 생강, 시금치, 순무, 아티쵸크(Artichoke), 얌(Yam), 양갓냉이, 양배추, 양파, 연근, 염교(Allium chinense), 완두(pea / Pisum sativum), 오이, 오크라, 우엉, 참깻잎, 참외, 취나물, 가공된 파속식물(Allium spp.), 파슬리, 파프리카, 풋옥수수, 호박, 호박잎, 토마토
 - * 수입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으로부터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함
 - * 뿌리달린 냉이의 경우,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 마늘: 껍질 벗긴 마늘(peeled clove) 또는 건조 구근(dry bulb)만 수출 가능
 - * 미나리 : 뿌리가 없는 상태의 미나리 잎과 줄기로 상업화물로 수출하여야 함. 식물 검역 증명서 부기사항 확인
 - * 샬롯, 양파, 염교: 건조 구근(Drv bulb)만 수출 가능
 - * 가공된 파속(Allium spp.) 식물(bulb에 한함): 양파(Allium cepa), 샬롯(Allium cepa subsp. aggregatum), 염교(Allium chinense), 대파(Allium fistulosum), 리크(Allium porrum), 마늘(Allium sativum), 파(Allium schoenoprasum), 부추(Allium tuberosum) 해당
- 특작류 : 수삼, 인삼
 - * 수삼의 경우, 수입허가(import permit)가 필요하며,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종자류: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배추, 브로콜리,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호접란,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국화
 - * 국화절화는 조건부 요건(생산지 지정, 재배지검사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묘목, 구근류(재배매체 제거): 선인장, 호접란, 심비디움, 틸란디시아묘, 에케베리아묘 등

• 축산물

- 젤라틴/콜라겐, 게맛살, 양어사료, 어유추출물, 열처리가금제품(삼계탕 등)
- 과자류의 유청분말 성분(whey powder). 과자류의 유당 성분(lactose)
- 라면류의 우육 성분(beef soup stock). 라면류의 우골 추출물 성분(beef bone extract). 라면류의 계란 성분(egg powder), 라면류의 유청분말 성분(whey powder)
- 육류가 포함된 다시다류(soup stock),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다시다류(soup stock)
- 아이스크림 믹스류, 계란이 포함된 제품(알가공품), 소고기 추출물(Beef Extract)이 포함된 식품, 우유가 포함된 음료
- 반려동물 사료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미국 본토)
 - 곡류 : 옥수수, 도토리
 - 채소류 : 감자, 고구마,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곤드레나물, 곰취나물, 머위나물, 삼채, 세발나물, 질경이나물, 비름나물, 케일, 콩나물
 - * 박과작물 중 Ivy gourd(Coccinia grandis)는 하와이 수출 불가
 - 과실류: 대추, 복숭아, 살구, 자두
 - 화훼묘·분화: 재배매체에 심겨진 모든 식물
 - 묘·묘목류 등 재식용식물 : 아카시아 호키이(Acacia hockii), 아카에나 노바에젤란디에(Acaena novae-zelandiae), 악티노스키르푸스 그로수스(Actinoscirpus grossus), 아도니스 미크로카르파 (Adonis microcarpa), 안드로포곤 가야누스(Andropogon gayanus), 아르테미시아 아우스트리아카 (Artemisia austriaca), 아우스트로유파토리움 이눌리폴리움(Austroeupatorium inulifolium), 베르베리스 글라우코카르파(Berberis glaucocarpa), 버키야 리지다(Berkheya rigida), 비덴스 수발터넌스(Bidens subalternans), 브로무스 펙티나투스(Bromus pectinatus), 브루기에라 짐노리자 (Bruguiera gymnorhiza), 캄풀로클리니움 마크로세팔룸(Campuloclinium macrocephalum), 카리크테라 안누아(Carrichtera annua), 카시니아 아르쿠아타(Cassinia arcuata), 케스트림 레비가툼 (Cestrum laevigatum), 시네라리아 리라티포르미스(Cineraria lyratiformis), 코르디아 쿠라시비카 (Cordia curassavica), 크래슐라 헬름시이(Crassula helmsii), 크라태구스 시나이카(Crataegus x sinaica), 시아노티스 악실라리스(Cyanotis axillaris), 사이퍼러스 아로마티쿠스(Cyperus aromaticus), 사이퍼러스 브라켈리마(Cyperus bracheilema), 사이퍼러스 엑살타투스(Cyperus exaltatus), 사이퍼러스 플라비두스(Cyperus flavidus), 데리스 트리폴리아타(Derris trifoliata), 데스모스타키아 비피나타(Desmostachya bipinnata), 디지타리아 터네이타(Digitaria ternata), 에키노클로아 피라미달리스(Echinochloa pyramidalis), 엘라틴 암비구아(Elatine ambigua), 일레오카리스 쿠로구와이(Eleocharis kuroguwai), 에리카 아르보레아(Erica arborea), 유클레아 디비노룸(Euclea divinorum), 프락시누스 플로리분다(Fraxinus floribunda), 푸이레나 실리아리스 (Fuirena ciliaris), 푸마리아 슐라이헤리(Fumaria schleicheri), 나팔꽃속 그나팔리움 아피네 (Gnaphalium affine), 곰프레나 셀로시오이데스(Gomphrena celosioides), 하케아 기보사(Hakea gibbosa), 하케아 살리시폴리아(Hakea salicifolia), 하케아 세리케아(Hakea sericea), 임파티엔스 파르비플로라(Impatiens parviflora), 이포모에아 페스-티그리디스(Ipomoea pes-tigridis), 아이사크 네 글로보사(Isachne globosa), 크나우티아 인테그리폴리아(Knautia integrifolia), 라우나

에아 코르누타(Launaea cornuta), 림노비움 레비가툼(Limnobium laevigatum), 리트세아 글루티 노사(Litsea glutinosa), 로니세라 아쿠미나타(Lonicera acuminata), 루드위기아 히소피폴리아 (Ludwigia hyssopifolia), 루드위기아 프로스트라타(Ludwigia prostrata), 럼니체라 라세모사 (Lumnitzera racemosa), 루지올라 수빈테그라(Luziola subintegra), 미스카투스 네팔레시스 (Miscanthus nepalensis), 마이오포룸 테누이폴리움(Myoporum tenuifolium), 남포이데스 크리스 타타(Nymphoides cristata), 오토클로아 노도사(Ottochloa nodosa), 페르시카리아 툰베르기이 (Persicaria thunbergii), 피크노몬 아카르나(Picnomon acarna), 포타모게톤 디스팅투스 (Potamogeton distinctus), 포타모게톤 슈바인푸르티이(Potamogeton schweinfurthii), 프락셀리스 클레마티데아(Praxelis clematidea), 루멕스 사지타투스(Rumex sagittatus), 사지타리아 피그마 이아(Sagittaria pygmaea), 세네시오 앙굴라투스(Senecio angulatus), 세네시오 글라스티폴리우스 (Senecio glastifolius), 스트라티오테스 알로이데스(Stratiotes aloides), 타르코난투스 캄포라투스 (Tarchonanthus camphoratus), 톡시코덴드론 석세다네움(Toxicodendron succedaneum), 바켈리아 호키이(Vachellia hockii), 바켈리아 카루(Vachellia karroo), 윅스트로에미아 인디카 (Wikstroemia indica) 등

• 농산물(괌, 사이판)

- 곡류 : 옥수수
- 채소류: 토란, 콩나물, 박과작물 중 인도나물외(Ivy gourd)는 수출불가
- 묘·묘목류 등 재식용식물 : 아카시아 호키이(Acacia hockii), 아카에나 노바에젤란디에(Acaena novae-zelandiae), 악티노스키르푸스 그로수스(Actinoscirpus grossus), 아도니스 미크로카르파 (Adonis microcarpa), 안드로포곤 가야누스(Andropogon gayanus), 아르테미시아 아우스트리아카 (Artemisia austriaca), 아우스트로유파토리움 이눌리폴리움(Austroeupatorium inulifolium), 베르 베리스 글라우코카르파(Berberis glaucocarpa), 버키야 리지다(Berkheya rigida), 비덴스 수발 터넌스(Bidens subalternans), 브로무스 펙티나투스(Bromus pectinatus), 브루기에라 짐노리자 (Bruguiera gymnorhiza), 캄풀로클리니움 마크로세팔룸(Campuloclinium macrocephalum), 카리 크테라 안누아(Carrichtera annua), 카시니아 아르쿠아타(Cassinia arcuata), 케스트럼 레비가툼 (Cestrum laevigatum), 시네라리아 리라티포르미스(Cineraria lyratiformis), 코르디아 쿠라시비카 (Cordia curassavica), 크래슐라 헬름시이(Crassula helmsii), 크라태구스 시나이카(Crataegus x sinaica), 시아노티스 악실라리스(Cyanotis axillaris), 사이퍼러스 아로마티쿠스(Cyperus aromaticus), 사이퍼러스 브라켈리마(Cyperus bracheilema), 사이퍼러스 엑살타투스(Cyperus exaltatus), 사이퍼러스 플라비두스(Cyperus flavidus), 데리스 트리폴리아타(Derris trifoliata), 데스 모스타키아 비피나타(Desmostachya bipinnata), 디지타리아 터네이타(Digitaria ternata), 에키노

클로아 피라미달리스(Echinochloa pyramidalis), 엘라틴 암비구아(Elatine ambigua), 일레오카리스 쿠로구와이(Eleocharis kuroguwai), 에리카 아르보레아(Erica arborea), 유클레아 디비노룸 (Euclea divinorum), 프락시누스 플로리분다(Fraxinus floribunda), 푸이레나 실리아리스(Fuirena ciliaris). 푸마리아 슐라이헤리(Fumaria schleicheri). 나팔꽃속 그나팔리움 아피네(Gnaphalium affine). 곰프레나 셀로시오이데스(Gomphrena celosioides). 하케아 기보사(Hakea gibbosa). 하케아 살리시폴리아(Hakea salicifolia), 하케아 세리케아(Hakea sericea), 임파티엔스 파르비 플로라(Impatiens parviflora), 이포모에아 페스-티그리디스(Ipomoea pes-tigridis), 아이사크네 글로보사(Isachne globosa), 크나우티아 인테그리폴리아(Knautia integrifolia), 라우나에아 코르 누타(Launaea cornuta), 릮노비움 레비가툮(Limnobium laevigatum), 리트세아 글루티노사(Litsea glutinosa), 로니세라 아쿠미나타(Lonicera acuminata), 루드위기아 히소피폴리아(Ludwigia hyssopifolia), 루드위기아 프로스트라타(Ludwigia prostrata), 럼니체라 라세모사(Lumnitzera racemosa), 루지올라 수빈테그라(Luziola subintegra), 미스칸투스 네팔렌시스(Miscanthus nepalensis), 마이오포룸 테누이폴리움(Myoporum tenuifolium), 님포이데스 크리스타타 (Nymphoides cristata), 오토클로아 노도사(Ottochloa nodosa), 페르시카리아 툰베르기이 (Persicaria thunbergii), 피크노몬 아카르나(Picnomon acarna), 포타모게톤 디스팅투스 (Potamogeton distinctus), 포타모게톤 슈바인푸르티이(Potamogeton schweinfurthii), 프락셀리스 클레마티데아(Praxelis clematidea), 루멕스 사지타투스(Rumex sagittatus), 사지타리아 피그마 이아(Sagittaria pygmaea), 세네시오 앙굴라투스(Senecio angulatus), 세네시오 글라스티폴리우스 (Senecio glastifolius), 스트라티오테스 알로이데스(Stratiotes aloides), 타르코난투스 캄포라투스 (Tarchonanthus camphoratus), 톡시코덴드론 석세다네움(Toxicodendron succedaneum), 바켈리아 호키이(Vachellia hockii), 바켈리아 카루(Vachellia karroo), 윅스트로에미아 인디카 (Wikstroemia indica) 등

* 괌, 사이판을 포함한 미국 검역당국은 자국으로 수입가능한 품목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http://acir.aphis.usda.gov/s/)

◆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표 12.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H-Mart (미국)
업체 유형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Mr. Park (고객 관리자)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제품 품질력이 더해져 기본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임. 미국 소비자들은 맛보다 건강을 더 신경쓰는 경향이 강함
- 한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라면과 국수만 연상하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의 인지도가 높아짐. 한국산 간편식 제품과 과자, 음료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미국에 유통됨
- 미국 내 한국산 쌀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품종을 쉽게 찾을 수 있음

- 건강한 식생활과 다양한 요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 양배추, 버섯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 특히 건강에 효과적인 인삼의 인기가 돋보임
- 한국산 신선과일과 신선채소는 아직 수요가 적은 편이나 미국 소비자들은 과일에 대한 수요가 높음. 이들은 입맛이 까다롭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데, 과일은 종류와 원산지를 불문하고 구매해 보는 편이어서 한국산 과일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수입 시 애로사항

- 미국은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만 자국민 내에 유통되도록 엄격한 규정과 점검을 시행함. 따라서 절차가 다소 오래 걸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몇 년 전보다 식품에서 화학물질 잔류물과 병원균이 발견되는 수가 증가해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억격해짐
- 다만 미국도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한 체계적인 수출입 과정을 마련함
- 최근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이슈
- 최근 대규모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간혹 육류, 버섯, 향신료에서 화학물질 잔류물이나 병원균이 발견되어 보고된 바 있음

비관세장벽 현황 03

(1) SPS

♠ 주요 SPS 내용

-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은 한국산 신선 배(Pyrus pyrifolia var. culta)의 미국 수입을 위한 병해충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현지 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한국산 신선 배 과실도 모든 미국 항만 으로 수입이 되도록 허용함
- 식품의 유통추적을 위해 기록보관 의무를 도입할 예정임. 제안된 규정안은 식품의약국(FDA) 에서 식품 추적관리 대상 목록(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한 식품에만 적용이 되며, 식품 추적관리 대상 목록으로 지정한 식품을 제조, 처리, 포장 또는 보관하는 이에게 공급망 내에서 추적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식품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을 작성 및 보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시행하여 미국 내 및 수입 식품에 사전 예방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국내 농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는 FDA 실사, 안전성 검증 등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 미국은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해 2022년 7월 1일부터 전국 수입 경보를 발령하여 수입 규제를 강화함. 미국은 수입 버섯과 연계된 리스테리아균 발병을 예방하고자 「수입특산버섯 예방전략」을 세워 관리 하고 있음
 - 미국은 모든 식품에 대한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 사용을 2023년 12월 22일 부터 금지함. 그간 사전 승인 식품 또는 일부 식품에 부분경화유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예외 기준을 삭제함
- 한국업체가 미국의 수입 미허가 품목인 메기 매운탕을 조리하는 밀키트 제품을 통관하려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자,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2022년 6월 한국산 메기목 어류 제품에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하여 수입을 제한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 기준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a3b 649316ccb17c31211db2edd81f789&mc=true&n ode=pt40.24.180&rgn=div5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182
미생물 규정 (신선과일 및 채소)	식품별 규격 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 search-fda-guidance-documents/guidance- industry-guide-minimize-microbial-food- safety-hazards-fresh-fruits-and-vegetables

● 통보문 개정현황(2024년)

• 한국산 수삼 수입허용 기본 요건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 2024년 6월 24일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을 수입허용 대상 으로 최종 공고 - 정부는 2017년부터 국산 수삼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음
세부 내용	 수삼수입 허용 기본 요건 한국 국립식물보호기구(NPPO)에 등록된 생산지에서 재배되고 NPPO의 승인을 받은 시설 에서 포장 각 선적물에 대해 NPPO가 검사를 실시하여 해충이 없음을 확인 수삼은 미국 입항 항구에서 해충검사를 받게 됨
	• 우리나라의 대미 수삼 수출은 동식물검역청(APHIS)이 요구하는 규정을 따라야 함 - 위험관리문서(Risk Management Document, RMD)에 명시된 식물 검역 조치를 따라야 함 - 또, 모든 과일 및 채소 수입에 미국이 적용하는 "부속 L - 과일 및 채소" 규정 (7 CFR § 319.56-3)에 나열된 일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RMD: 해충위험 평가에 따라, 해충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신선한 인삼 뿌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위생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위험관리문서
통보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예정일	2024년 6월 24일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d=NTB0203705

• 한국산 가금육 제품 수입에 대한 검역검사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가금제품에 대한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을 개정, 2024년 5월 23일부터 시행 동 지침은 미국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청(FSIS)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동 제품에 대한 미국의 검역검사 기준을 반영 개정은 미생물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가금육과 가금제품의 재검사 요청 불가하며 및 해당 원료 사용을 금지함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2009년 제정된 지침으로 대미 수출 가금제품의 도축검사, 선행요건프로그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성분규격검사,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절차에 대한 실행지침에 해당됨 미국 가금제품 수출 시 주의 사항 수출작업장 지정 및 등록: 수출작업장 지정 신청 시 HACCP 기준서, 선행요건프로그램, 관련 자체 운영 1개월 이상 운영 실적 등 작업장 위생 관련 서류를 사전 제출해야 함 수출작업 계획서 제출 : 수출작업장은 수출작업 개시 최소 1개월 전까지 월별 대미 수출작업 계획서를 관할 지방청장 또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함 수출 작업장은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산물 수출증명신청서 발급 신청이 필요함 미국으로 가금육 및 가금제품을 수출하는 식품기업은 살모델라, 리스테리아, 세균 발육 검사 시 재검사 요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또,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생산·가공·보관업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미국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식품 생산가공시설 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해야함
통보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예정일	2024년 5월 23일
개정현황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d=NTB0203706

(2) TBT

♪ 주요 TBT 내용

- 미국 국가유기프로그램(USDA National Organic Program) 규정 개정안
 - 2024년 3월 12일 유기농 버섯 생산 및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함. 버섯 기질 및 배양 기반 유기농 인증 기준, 유기 애완동물 사료의 조성·라벨링 요건 및 특정 합성물질 사용 허용 등을 포함하여 개정됨.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됨.
 - 2024년 8월 9일 2025년 만료 검토(Sunset Review) 절차를 거쳐 유기농 생산에서 허용 및 금지되는 47개 물질 목록 갱신함. 2025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

• 식품안전검사청(FSIS) 규제 개정안(2024년)

- "미국 원산지 표기가 있는 식품안전검사청(FSIS) 규제 제품의 자발적 라벨 표기 규정 개정"이 2024년 3월 18일 공표됨. 육류, 가금류, 계란 제품 및 자발적 검사 제품의 'Product of USA' 및 'Made in the USA' 라벨 사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국산 원산지 표기 요건을 강화함.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동물 사육 및 환경 관련 라벨링 주장 입증 지침 개정"이 2024년 9월 10일 공표됨.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동물 복지, 사료, 항생제 및 호르몬 미사용, 원산지·유기농·환경 관련 주장에 대한 문서 요구사항을 강화함. 공표일과 동시에 발효됨.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식품 표시 규정에 대한 통일된 시행일 규정 개정"이 2024년 11월 27일 공표됨. 2025~2026년 발행될 새로운 육류 및 가금류 제품 표시 규정의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통일하여 표시 변경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함. 공표일과 동시에 발효됨.

•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7편 개정안(2024년)

- "발의안 65 - 식품 내 아크릴아미드 경고 표시 기준 개정"이 2024년 4월 8일과 10월 18일에 공표됨. 4월 개정에서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경고 옵션 추가, 기존 경고 문구 개정 및 선택적 경고 문구 추가가 포함됨. 10월 개정에서는 국제 기관(WHO, EPA, NTP)의 아크릴아미드 발암성 평가 내용을 반영한 선택적 경고 문구 추가, 웹사이트 안내 문구 조정 등의 변경 사항이 반영됨.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

-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 세이프하버 방법 및 내용 개정"이 2024년 6월 17일과 11월 26일에 공표됨. 6월 개정에서는 다기 경고 문구 시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온라인·카탈로그 경고 문구를 기존 규정으로 되돌리고, 인터넷 소매업체에 60일 유예 기간을 부여함, 11월 개정에서는 최소 하나의 화학명을 포함하는 새로운 약식 경고 옵션 도입, 기존 약식 경고에서 새로운 경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3년 유예 기가 제공, 특정 제품군(자동차·해양 선박 부품 등) 맞춤형 세이프하버 경고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함.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색소첨가물 인증 및 인증서비스 수수료 인상 규정 개정"이 2024년 4월 26일 공표됨. 식품의약국 (FDA)은 색소첩가물 인증서비스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하을 2024년 6월 27일까지 수렴함. 본 개정은 연방규정집(CFR) 제21편 제80부에 적용되며, 최종 시행일은 추후 결정됨.
- "메인주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규제 개정"이 2024년 8월 7일 공표됚. 기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반 통지 요구사항을 삭제하고, PFAS가 의도적으로 첩가된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특정 면제 조항 추가. '현재 불가피한 사용(CUU)' 제품에 대한 보고 프로그램 신설이 포함됨. 메인주 환경보호부(DEP)가 규칙 제정을 진행할 예정임.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 및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날짜 라벨링 규정 관련 정보 요청"이 2024년 12월 16일 공표됨.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날짜 라벨링 표준화, 소비자 인식, 식품 페기물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개 의견을 2025년 2월 3일 까지 수렴함. 시행일은 추후 결정됨.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미국 식품의약국(FDA)	https://www.fda.gov/files/food/published/Food- Labeling-Guide-%28PDF%29.pdf
주요 인증 사이트	IFANCA 인증 Non-GMO 인증 미국 농무부 산하 마케팅지원청 (USDA Organic 인증)	https://www.ifanca.org/ https://www.nongmoproject.org/ https://www.ams.usda.gov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표기언(제품명용량	아 아원산지 • 성분정보 • 원료 정보 • 알레르겐 • 알레르기 정보 • 제조자, 포장업체, 유통업체 정보, 이름 및 주소
	표기언어	외국어 표기도 가능하나, 모든 필수정보는 영어로도 표기되어야 함
		브랜드 이름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의 일반명칭(Statement of Identity)을 사용해야 함
	제품명	제품의 전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최소한 가장 큰 라벨 면에서 1/2만큼을 차지하도록 표기되어야 함
	1100	바닥과 평행하게 작성되어야 함
		식품이 액체가 아닌 경우 형태(Sliced, Unsliced, Halves) 등을 명시해야 함
		주스(과일 및 채소) 음료의 경우 주스 함유량(%)을 표기해야 함
		주 표시면 30% 하단에 위치해야 함
	요량	영미 파운드법(oz, lb, quart)에 따라 표기되어야 하며, 분수 또는 소수점 등의 표기도 허용함
라벨		국제단위(g, kg, L 등 미터법)도 함께 표기해야 함
표기사항 (가이드)		고체 제품의 경우 'Net Weight'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액체 등의 제품은 'Net Contents' 또는 'Net' 등의 단어 사용은 선택 사항임
		용량은 순중량으로만 나타내야 함
	원산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지 않으나, 미국 세관과 관세국경보호청 (CBP)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함
		미국 내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근처에 영어로 표기해야 함
		원료 정보는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나열해야 함
		전체 제품 용량 및 무게의 2% 이하를 구성하는 성분의 표기는 위 방식을 적용하지 않음
	원료정보	하위 구성 요소의 경우 괄호 안에 넣음, 그 자체로 2개 이상의 원료를 함유하는 복합 원재료는 육류 검사법, 가금류 제품 검사법,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라 규정된 정의 제품명 표준에 따라 표기해야 함
		허가된 방부제 첨가 시 방부제의 통상 명칭 및 기능을 표기해야 함
		공인된 색소는 약어 또는 특정 이름을 사용해야 함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라벨에 영양성분표를 포함해야 함
		열량, 총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철분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4살 이상이 한 번에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양을 표기하는 1회 섭취량이 포함되어야 함
	성분정보	영양성분표에 표준 1회 섭취량에 대한 영양정보와 실제 해당 유닛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 정보를 기존 영양성분표 오른쪽에 추가하여 표기해야 함
		일일섭취량을 기준으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DV)를 표기해야 함
		수출용 제품 라벨의 면적에 따라 영양성분표의 규정된 위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영양성분표의 포맷이 다양하므로 제품의 크기나 라벨의 면적에 따라 적합한 포맷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알레르겐 정보	주요 알레르기원은 다음과 같은 9가지 항목임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대두, 밀, 참깨
	성도	견과류의 경우 정확한 종류가 표기되어야 하며, 생선 또는 갑각류 동물의 경우 정확한 종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함
		Contains의 C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해야 함
	제조자,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을 표기해야 함
	포장업체, 유통업체 정보, 이름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도로 이름 및 번호, 도시, 집(Zip) 코드, 주 등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함
	및 주소	제조업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과 관련된 업체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자료: 미국 식품의약국(FDA), KATI농식품수출정보

• 잼류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SKIPPY			
원재료명	구운 땅콩, 설탕, 수소화 식물성 기름(목화씨 ,콩, 유채), 소금			
내용량	1134g			
유통기한	2024년 9월 24일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 (단,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			
제조사	Skippy Foods			
유통업체	Hormel Foods Sales LLC, 1 Hormel Place, Austin, MN 55912			
영양성분표시	- 용기당 14 인분 - 2 큰술 제공량(32g) 기준 열량 190 단백질 7g 7%			
	총 지방 16g	21%	비타민 D 0mcg	0%
	포화지방 3g		칼슘 0mg	0%
	트랜스지방 0g		철분 0.4mg	2%
	콜레스테롤 0mg	0%	칼륨 90mg	2%
	나트륨 150mg	7%	비타민 E 1.5mg	10%
	총 탄수화물 6g	2%	니아신 3.2mg	20%
	식이섬유 2g	7%		
	총 설탕량 3g			
	첨가당 2g 포함	4%		
알레르겐 주의 성분	땅콩			

• 간장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키코만 저염 간장		
원재료명	물, 대두, 밀, 소금, 젖산, 소듐, 벤조에이트 (보존제로서 1/10 이하 함유)		
원산지	미국		
제조사	키코만 푸드(KIKKOMAN FOODS INC.)		
알레르겐 주의 성분	대두, 밀		
내용량	20 FL OZ(591ml)		
저장방법	개봉 후 냉장보관		
영양성분표시	- 1회 제공량 1큰술(10ml) - 총 39회 제공량		
	에너지 10kcal	%DV	
	지방 0g	0%	
	나트륨 590mg	26%	
	총 탄수화물 1g	0%	
	단백질 1g	-	
	본 제품은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식이 섬유, 총 당류, 첨가당류, 비타민 D, 칼슘, 철분 및 칼륨의 원천이 아닙니다.		
알레르겐 주의 성분	대두		

● 인증

[필수 인증]

-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
 -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국내외 시설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식품의약국 (FDA)에 식품시설등록(FFR)을 진행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020년 10월 1일부터 식품 시설등록(FFR) 신청 시'국제 사업자 등록 번호'로 통용되는 DUNS number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외 식품시설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함. 단, 식품시설등록(FFR)은 시설 등록 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국(FDA)의 로고 또는 식품의약청(FDA) 승인, 허가, 인증의 문구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식품의약국(FDA)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는 식품·동물사료·식품첨가물·저산성식품·산성화 식품 등이 있음
 - 산성화 식품(AF)과 저산성 식품(LACF)의 경우,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별도로 식품의약국 (FDA)에 식품시설등록(FCE)과 공정등록(SID)을 해야 함

인증명	· 미국 FDA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 미국 식품의약국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원재료 세부 목록, 위생관련 정보, 기타 인증 취득정보 등 현장실 사용 별도 제출 서류: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제품별 공정흐름도, 품질 관련 인증서 사본, 제조 관련 기록물, 공급원 목록 및 공급내역,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명칭 및 수량 정보 등 	_			
비용	• 없음				
유효기간	・2년(최초 1회 등록 후 2년마다 갱신 필요)				
절차	・시스템 로그인 및 시설등록 페이지 접속 → 식품시설정보 기재 → 미국 대리인 검증 → 등록 정보 검증 → 등록 확인 및 등록번호 발급				

[선택 인증]

- 미국 유기농(USDA Organic) 인증
 - 미국 유기농(USDA Organic) 인증은 유기농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 유제품, 축산물, 수산물 등에 발급되는 인증임. 유기농 제품은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 원료 함유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디자인에 차이가 있음. 2014년 7월 발효된 「한 미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 별도 획득 없이도 '유기 (Organic)'로 표시하여 수출입이 가능함
 - 2023.1월, 미국 USDA는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의 강화 계획을 밝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에 대해 NOP 수입 증명서가 사용됨

인증명	• USDA Organic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 미국 농무부(USDA)			
강제유무	· 선택	USDA Organic		
제출 서류	• 신청인 정보, 제품 정보, 이전에 신청한 모든 유기인증제 정보, 최근 3년 간 재배 등에 사용한 화학물질 이력, 유기농 생산 또는 시스템 계획서	Gladino		
비용	• 최초 신청 시 품목당 800달러 (현장실사비용 별도)			
소요기간	•약 6~10주			
절차	・USDA 공인인증기관 검색 → 인증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서류심사 → 현장실사 실시 → 조사결과 종합 및 인증서 발급			

• IFANCA 할랄 인증

- 할랄 식품 소비자에게 허용되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할랄 표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IFANCA(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인증은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할랄 인증으로, IFANCA는 국제적으로 주요 할랄 인증기관 중 하나이며 65개국에서 통용됨. IFANCA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슬람 식품 기준 부합, 모든 서류요건 충족, 할랄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할랄 식재료만 사용, 식재료 준비나 생산가공, 포장, 보관, 저장, 운반 등의 모든 단계에서 하람 식품 제외, 이슬람 방식의 청결 및 위생 절차 준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

인증명	· IFANCA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IFAN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 CED.
강제유무	• 선택	A CERTIF
제출 서류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원재료 세부 목록, 위생관련 정보, 기타 인증 취득정보 등 현장실사용 별도 제출 서류: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제품별 공정흐름도, 품질 관련 인증서 사본, 제조 관련 기록물, 공급원 목록 및 공급내역,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명칭 및 수량 정보 등 	HALAL
비용	•약 3,500달러	
소요기간	· 3개월~6개월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비용 산정 → 현장 실사	→ 평가서 작성 → 할랄인증서 발부

• 코셔(Kosher) 인증

- 유대교의 율법에 기반을 둔 식품과 그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인증이며,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제품, 설비 등 전 제조공정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코셔 인증기관 중 세계적 인지도를 지닌 OU 인증의 경우 세계 104개국 9.011개 공장에서 생산된 8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함. 코셔 인증 취득을 위해 서는 원료, 제조공정, 제품, 포장 등 전 과정에서 코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코셔 인증 제품은 유대인을 위한 인증으로써 기능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코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인증명	• 코셔(Kosher)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 OU(Orthodox Union)				
강제유무	· OU(Orthodox Union) · 선택(민간 인증)				
제출 서류	• 회사정보, 공장정보, 공장 원재료 목록, 제품허가요청서				
비용	• 품목당 약 400~1,000만 원				
소요기간	• 3개월~6개월				
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 랍비 배정 → 시설 심사 → 서류 및 시설심사 보고서 검토 → 계약서 검토 및 서명 → 라벨링 송부 및 최종승인				
인증명	• 코셔(Kosher)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 Star-K	\checkmark			
강제유무	• 선택				
제출 서류	· 신청서(업체명, 주소, 연락정보 등)	Star-K Kosher Certification			
비용	・취득비 400만~1,000만 원 ・대행비 1,000만 원 이상 ・컨설팅비 약 3,000~5,000 달러				
소요기간	· 3개월~6개월				
절차	・신청서 제출 → 추가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비용 인증서 발급	산정 → 시설 심사 → 계약 →			

• 글루텐프리 인증

- 서유럽·북미·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셀리악(Celiac disease, 밀가루 알레르기) 환자 비중이 높아지며 글루텐프리 식품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글루텐프리 식품 라벨링 최종 규칙을 발효하였으나 제조업체의 자발적 준수 규정이며, GFCO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인증명	• 글루텐프리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GFCO) Certified			
강제유무	· · · · · · · · · · · · · · · · · · ·			
제출 서류	• 현재 제품 및 성분 목록, 조직도, 직업 세부설명, 구매 문서,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 글루텐에 대한 공급업체 명세서, 교육자료(직원 교육 기록), 검사 확인 문서, 글루텐 위험 분석, 포장/라벨 점검 문서, 전년 시정 조치 보고서			
비용	• 품목당 약 180만 원			
소요기간	· 약 6~18주			
절차	• 제조공장 등록 → 인증기관 확인 → 인증 신청 → 신청서 검토 후 견적 → 견적승인 및 수수료 납부 → 공장실사 실시 → 감사보고서 수령 → 부적합 사항 시정 → 인증 결정			

• NON-GMO 인증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회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Non-GMO 라벨링이 중요한 마케팅요인 중 하나임. 유전자변형 식품은 유전자변형 정도에 따라 추척관찰 위험군, 저위험군, 고위험군의 3단계 위험 수준으로 구분됨. Non-GMO 인증은 완제품의 0.9~5% 수준까지 유전자변형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인증명	• NON-GMO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Non-GMO Project				
강제유무	• 선택	NON GMO			
제출 서류	• 송장, 구매 증명서, 시설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 및 재료와 시설의 수, 라이선스 계약서, 원료 리스트, 생산 설비 정보, 검사결과 등, 재료 분석 증명서	V E R I F I E D			
비용	• 제품당 약 200만~500만 원				
소요기간	• 3개월~6개월				
절차	・기술관리기관(TA) 선택 →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사전평가 및 견적 → 현장심사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인증마크 부여				

(3) 통관거부사례 현황

▶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4년 미국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145건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 건수는 603건으로 집계됨. 사유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라벨링/포장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24년에는 기타 문제사유도 51건으로 높게 나타남

표 13. 2022~24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라벨링/포장	126	96	51	273
성분 부적합	46	57	5	108
위생	25	21	21	67
서류미비	23	23	8	54
잔류농약 검출	4	5	9	18
기타	27	5	51	83
합계	251	207	145	603

▶ 2024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4년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한 개 문제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유가 확인된 복합 문제사례를 포함하면 총 145건이며, 라벨링/포장과 기타 사유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 수치가 모두 51건으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14. 2024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6	14	9	2	2	6	0	2	2	2	0	6	51
성분 부적합	0	2	1	1	0	0	0	1	0	0	0	0	5
위생	1	1	1	2	4	8	2	1	0	0	0	1	21
서류미비	2	1	1	0	0	3	0	1	0	0	0	0	8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4	5	0	0	0	0	9
기타	1	0	0	0	9	29	6	6	0	0	0	0	51
합계	10	18	12	5	15	46	12	16	2	2	0	7	145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성분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3
	라벨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 소비자가 읽고 이해하기 어려움	8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2
	수출업자 주소지 및 연락처 미표기	5
	'식이보조제' 문구 제외로 제품 종류 확인 불가	3
라벨링/포장	영양소 정보 미기재	9
	인공색소 성분 미표기	1
	적절한 사용법이(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1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정보 미표기	3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10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6
	건강에 유해한 독성물질 발견	1
성분	독성물질 검출	1
ਹੱ ਦ	승인받지 못한 신약 포함	2
	유해색소 함유	1
	리스테리아균 검출	16
위생	살모넬라균 검출	1
	비위생적인 환경에 서제조	4
서류미비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8
잔류농약	살충제 화학 물질 검출	9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3
기타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	45
71-1	제조업체의 제품이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3
	합계	145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기타조제 농산품	54	37.2	FSVP 조항 위반
	과자류	32	22.1	FSVP 조항 위반
	소스류	17	11.7	라벨 표시 오류
	음료	10	6.9	라벨링 표시 오류
농산물		5	3.4	기타
중신물		3	2.1	살충제 검출
		2	1.4	라벨 표시 오류
		2	1.4	라벨링 표시 오류
	채소류	2	1.4	서류 미비
	인삼류	2	1.4	비위생적 제조
	소 계	129	89.0	
ALLE	갑각류	9	6.2	라벨링 표시 오류
수산물	어류	5	3.4	서류 미비
소 계		14	9.7	
축산물	기타 축산물 부산물	2	1.4	라벨링 표시 오류
	소 계		1.4	
총합계		145	100.0	

04 수출 애로사항

● FDA 시설 등록 및 FSVP 관련 규정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TBT
주요 내용	 FDA 시설 등록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2024년 갱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DUNS 번호를 통해 시설 위치를 검증하며, 동일 공장 내 다른 제조라인도 단일 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함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검증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실시됨 * 연간 현장 검사(공인감사원 수행), 샘플 테스트, 공급자 기록 검토, 제3자 인증서 획득 수입 후 최소 2년간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함 SID(Submission Identifier) 발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분됨 * 산도(pH) 4.6 이상: 저산도 통조림(LACF) / 산도 4.6 이하: 산성화 식품(AF) 식별 체계는 FCE번호(5자리)+제조일자(6자리)+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됨 농산물 원재료 단순포장(가공 없을 시)의 경우 FSVP가 면제됨
애로 사항	• 중소 농식품 업체로서 FDA 등록과 수입식품 안전검증(FSVP) 관련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
기타	※ DUNS 넘버 신청 및 조회 가능한 D&B 포털 URL https://www.importregistration.dnb.com/ ※ 세부 유의사항 - DUNS 넘버는 시설 확인용이며, FDA 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없음 - DUNS 넘버 신청 후 번호를 받는 데까지는 대략 30~45일이 소요됨

● 팽이버섯 통관거부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팽이버섯
유형*	기타
주요 내용	 미국은 FD&C Act Section 402(a)(1)에 근거하여 식품 중 유해물질 검출 시 "불순물"로 판단하여 수입을 거부함 FDA의 무관용 정책(21 CFR 123.6(c))에 따라 조리 없이 섭취하는 신선식품(RTE)의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허용 기준은 0 CFU/g임 팽이버섯 라벨에 "가열 권장" 표기 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음 한국 식약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제4.13조에 따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허용 기준을 100 CFU/g 이하로 규정함 * 한국과 미국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미국 수출 시 해당 미국 현지 규정에 따라 팽이버섯을 수출할 필요가 있음 2022년 7월부터 발효된 수입경보 25-21(Import Alert 25-21)에 따라한국산 팽이버섯은 전량물리검사 없이 격리(DWPE)됨 FDA 조사결과, 한국 29개 수출업체 중 12개소(41%)에서 지속적 오염이 확인됨 통관거부로 FDA의 공식 통지서를 받은 수입업체는 10일 이내에 FDA 규정 준수자료를 Form FD-766에 제출해야함 특히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 오염으로 인한 통관거부 시 수입 경보 해제를 위해선연속 5회 이상의 청정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생산 시설의 HACCP·GAP(우수농산물인증) 기준 강화 및 문서화 과정이 요구됨 FDA는 Import Alert에 등재된 기업 및 품목에 대해서 물리적 검사 없이 자동 통관억류를 진행하게 되며, 현장 실사 강화 및 공개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함
애로 사항	 한국산 팽이버섯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 또는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 위반' 등의 이유로 통관 거부되고 있으나, FDA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확인하는 정보이다 보니 정확한 사유 및 차후 FDA의 처리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기타	※ 미국 FDA에서 통지한 FSVP 관련 지침 및 사이트 - FSVP 주요 요구사항 지침: https://www.fda.gov/media/94746/download?attachment - FSVP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 https://www.fda.gov/media/118241/download - FSVP 기록 제출을 위한 수입업체 포털: https://www.access.fda.gov/ ※ 미국 식품 독성물질 관련 규정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0&edition=prelim

♪ 제품 라벨링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TBT
주요 내용	 주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 PDP)에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함 *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통용명의 식품명 * "NET WT 200g" 형식의 순중량 * 우유/계란/땅콩 등 9대 알레르겐 강조 표기 * 정보면(Information Panel)에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함 * 제조업체 정보 * 함량순(내림차순)의 성분표 및 화학보존제 기능 표기 * 2024년 개정형식을 준수한 영양성분표(Added Sugar 강조) * 비살균 제품의 경우 "WARNING: This product has not been pasteurized"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유통기한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Best if Used By [날짜]" 형식으로 표기를 권고함 • 묶음판매 시 각 개별포장과 외부박스 모두 라벨링이 필요함
애로 사항	• 패키지 표시사항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움
기타	※ 미국 라벨링 규정 https://www.fda.gov/files/food/published/Food-Labeling-Guide-%28PDF%29.pdf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알코올 제품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알코올 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한 규정 검토
 - 알코올 수입 요건 및 수출 방법·절차 자문
 - 라벨링 검토

♪ 제품 조사 결과

- 알코올 제품의 규제 관할
 - 알코올 제품에는 다음 네 가지 법규가 적용될 수 있음
- ① 연방 알코올 관리법(FAA Act,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 라벨링과 광고
 - 기본 수입허가증
 - 라벨 승인증명서(COLA, Certificate of Label Approval)
- ②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 제품 요건
 - 제품 제조 및 구성
 - 기록 보관 및 보고
 - 세금 부과와 납부
 - 라벨링
- ③ 알코올 음료 라벨링법(ABLA, Alcohol Beverage Labeling Act)
 - 건강경고문 표기
- ④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식품시설등록
 - 라벸링

• 제품 분류

- 주정(에틸알코올)을 희석하여 제조한 알코올 함량 8.3% 제품
- 증류주로 분류되어 연방 알코올 관리법(FAA Act) 적용 대상
- 알코올 함량 8.3% 증류주는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관할이 아니라 주류· 담배세청(TTB,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관할 제품임

• 주류·담배세청(TTB) 관할 하의 알코올 제품 수입을 위한 사전 허가 및 승인

- ① 기본 수입허가증
 - 연방 알코올 관리법(FAA Act)에 따라 미국으로 증류주 수입 시, 주류·담배세청(TTB)로부터 사전 취득 필수
 - 신청서는 주류·담배세청(TTB)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각 주별로 사전에 취득해야 하는 허가증이 있으므로, 주별 요건도 준수해야 함
- ② 라벨 승인증명서(COLA)
 - 수입허가증 취득 후, 제품 라벨링을 주류·담배세청(TTB)에 제출하고 승인 필요
- ③ 제형 승인
 - 특정 증류주, 와인, 맥주는 주류·담배세청(TTB)에서 원재료와 생산 과정을 해당 제품이 생산되거나 수입되기 이전에 평가하는 과정이 수반됨
 - 일반적으로 제품에 향이 첨가되었거나 색소가 첨가된 경우, 또는 과일이나 과일주스, 과일 농축액, 허브, 향신료 등이 첨가된 경우에는 제형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제형 승인은 라벨 승인증명서(COLA) 이전에 거치는 절차임

• 식품의약국(FDA) 식품제조시설 등록(FFR) 및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관련 요건

- ① 식품제조시설 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 알코올 음료 제조시설도 식품제조시설로 분류되며,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시설로 등록해야 함
 - 식품제조시설 등록(FFR)은 식품의약청(FD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
 - 던스 넘버(DUNS Number)를 취득해야 하고, 한국에 있는 제조시설의 경우 미국에 상주하는 대리인이 있어야 함
 - 식품제조시설 등록(FFR)은 매 짝수년도에 갱신 필요

②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준수

- 식품 제조사는 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하에 시행되는 '식품에 관하 예방적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현행우수제조관행(CGMPs)과 위해요소 분석 및 위험 기반 예방통제, 직원 교육 훈련, 기록 작성 및 보관 요건 등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함
- 식품안전계획은 예방통제 자격자(PCOI)가 서면으로 구축하고 진행 및 관리해야 함

③ 사전 신고

- 알코올 음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 식품 제품은 미국내 도착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
- 항공 우송인 경우 도착하기 4시가 전까지. 해상 우송인 경우 도착하기 8시가 전까지 제출해야 함

• 연방 알코올 관리법(FAA Act) 규정 하 제품의 규격

- 증류주는 상업용 제품 용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용량별 병 또는 캔 사이즈가 규정되어 있음
- 메탈 용기(캔)의 경우 제품 용량: 355mL, 200mL, 100mL, 50mL
- 메탈 용기(캔) 이외의 경우 제품 용량: 1.8L, 1.75L, 1L, 900mL, 750mL, 720mL, 700mL, 375mL, 200mL, 100mL, 50mL

• 주류·담배세청(TTB) 증류주 관련 라벨링 규정

- ① 필수 표기 사항
 - 브랜드명: 제품 또는 제품 라인이 판매되는 이름
 - 제품 특징명: 제품을 추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선택된 설명적인 문구
 - 제품 종류: 증류주의 클래스 및 타입 표시
 - 알코올 함량: " % Alc. By Vol." 형식으로 표기("ABV" 표기는 불허)
 - 순중량: 허용된 내용량 반영
 -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
 - 건강경고문
 - 워사지
- ② 상황에 따른 필수 표기 사항(해당하는 경우)
 - 색소: 특정 착색료 함유 시 표기 필요
 - 황산역: 10 ppm 이상 함유 시 표기 필요
 - 워료 공개: 특정 제품의 경우 중성 스피릿 비율과 증류 워료 공개 필요
 - 숙성 기간 표기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 알루미늄 캔 재활용 관련 규정
- 미국의 음료 용기 재활용 규정은 주법이며 각 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
- 현재 10개 주에서 음료 용기 재활용 규정 실행 중(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욕, 오리건, 버몬트)
- 캘리포니아의 경우 알루미늄 캔 상단에 규정된 문구를 음각으로 표기해야 함
- ① CALIFORNIA REDEMPTION VALUE
- ② CA REDEMPTION VALUE
- (3) CALIFORNIA CASH REFUND
- (4) CA CASH REFUND
- (5) CA CRV

♪ 자문 결과

- 증류주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류·담배세청(TTB)의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 미국 수입자는 기본 수입허가증 취득 필요
 - 라벨 승인증명서(COLA) 승인 필요
- 제품 특성에 따라 제형 승인 필요할 수 있음
- 식품의약국(FDA) 식품제조시설 등록(FFR) 및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관련 요건 준수가 필요함
- 제조시설은 식품의약국(FDA)에 식품제조시설로 등록
-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하의 예방적 통제 규정 준수
- 수출 전 사전 신고 필요
- 라벨링 규정은 주류·담배세청(TTB)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필수 표기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브랜드명, 제품 특징명, 제품 종류 및 유형, 알코올 함량, 순중량, 제조/수입자 정보, 경고문구, 원산지 등
- 알루미늄 캔 제품의 경우 주별 재활용 규정을 확인하고 특히 캘리포니아 등 특정 주에서 요구 하는 표기 요건을 준수해야 함

(2) 건강기능식품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미국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식이보조식품) 영양성분표 작성 및 라벨링 검토

♪ 제품 조사 결과

- 패키지 라벨링 검토
 - 제품포장의 전면표기면 검토
 - 제품포장의 전면표기면은 포장재가 영문인 경우 영문만 기재하면 되지만, 국영문으로 기업하는 경우 영문의 가장 인접하게 국문을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국영문 병기 어려울 경우, 영문으로만 포장재 제작을 권고
 - 제품포장의 전면표기면은 제품군 명칭과 순중량이 포함되어야 함

브랜드명

- 영문과 한글로 브랜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문양 또는 명칭은 미국 특허청의 상표권에 저해 되지 않는 한 사용 가능
- ® 마크는 미국 내에 해당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

② 제품군 명칭

- 전면 표기부분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제품군 명칭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품군 명칭 이어야함
- 단순한 제품 명칭으로 충분하지 않음
- '주요성분: L-Theanine', '첨가 성분 표기: With GABA', '제품 형태: Capsules', '제품 분류: DIETARY SUPPLEMENT'등의 표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품 포장재에 영문 이외의 외국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군 명칭, 순중량, 영양성분표, 원재료 리스트, 알러게 표기, 제조사 표기 등 모든 기재사항들을 국영무 병기로 작성해야함. 국영무 병기 어려울 시 영문으로만 포장재 제작 권고

②-① 건강기능식품 제품군 명칭

- 식품의약국(FDA) 규정 상으로 식이보조식품은 식이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일반적인 식이를 보조하는 의도를 가진 제품으로 정의 (연방 식품 의약품·화장품 법, Section 201(ff) of the FD&C Act)
- 식품의 제품의 형태, 제품을 섭취하는 방법, 제품을 섭취하는 목적,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 등에 따라서 일반식품인지 식이보조식품인지 구분이 될 수 있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제조사의 몫

- 본 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이를 보조하는 성격의 식이성분이 주성분으로 함유된 제품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식이보조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식이보조식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특성인 식이 성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용어를 제품 전면부에 기재

③ 제품 설명

- 제품에 대한 설명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기 가능
- 제품 성분의 종류와 용량은 영양성분표 상의 수치와 일치해야 함

④ 건강 기능 주장

- 제품이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표현 가능
- 질병의 치유, 치료, 예방 효과 암시는 불가능
- 기능 강조표기 시 식품의약국(FDA) 규정 준수 필요
 - 1)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잘못된 정보여서는 안됨
 - 2) 제조사는 해당 표기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들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3) 제품에 강조표기를 하고 30일 안으로 식품의약국(FDA)에 표기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 4) 기능 강조표기에는 식품의약국(FDA) 면책문구 필수 포함해야 하며 강조표기 바로 하단에 면책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고, 강조표기마다 "*" 를 윗 첨자로 기재하고 하단에 면책문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표기할 수도 있음
 - 5) 식품의약국(FDA) 면책문구: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⑤ 순중량

- 순중량은 전면표기면 하단 30% 영역에 위치해야 함
- 전면표기면 면적에 따라 글자 폰트 크기 조정 필요. 폰트 크기를 기준하는 글자는 대문자만 사용하는 경우 대문자 폰트의 높이를 기준으로, 대소문자를 혼용하시는 경우 소문자 'o'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됨

글자 최소 높이	전면표기면 면적
1.6 mm	32cm² 0 ō⊦
3.2 mm	32cm² 초과 – 161cm² 이하
4.8 mm	161cm² 초과 - 645cm² 이하
6.4 mm	645cm² 초과 - 2,580cm² 이하
12.7 mm	2,580cm² 초과

- 미터법과 미국 도량단위 모두 표기 필요하며, 제품이 소포장 되어있는 경우 소포장의 개수 표기 해야 함
- ⑥ 한국 식약처 기준 표기사항
 -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은 미국 소비자 대상 판매 시 오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 권고
- 패키징 라벨링 검토 제품포장의 정보표기면 검토
- 제품포장의 2, 3, 4면은 정보표시면으로 간주
- 정보표시면은 전면표기면의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야 함. 만약 정보를 기재하기에 면적이 충분치 않은 경우 인접한 다음 면에 기재
- 표기 되어야하는 정보들은 영양성분표, 원재료 리스트, 알러겐, 표기사항, 제조사정보, 원산지 등임
- 영양성분표가 제일 상위에 오도록 해야 하며, 영양성분표 바로 밑으로 원재료 리스트, 알러겐 표기, 제조사 정보, 원산지가 오도록 위치를 배정
- 포장재가 영문인 경우 영문만 기재하면 되지만, 국영문으로 기입하는 경우 영문의 가장 인접하게 국문을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국영문 병기 어려울 경우, 영문으로만 포장재 제작을 권고
- ① 영양성분표
 - 식이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는 영양성분표 양식을 활용하여 표기
- ② 워재료 리스트
 - 포장 하단 또는 포장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
 - 원재료 명칭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 사용
 - 함량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기재
- ③ 알레르기 유발물질
 - 식품의약국(FDA) 규정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및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 표기
 - 견과류, 생선, 갑각류 및 조개류 등을 기재할 때는 구체적인 종의 명칭을 함께 기재
- ④ 교차오염
 - 필수 표기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기재 권장
 - 견과류, 생선, 갑각류 및 조개류 등을 기재할 때는 구체적인 종의 명칭을 함께 기재

⑤ 제조사 표기

- 영양성분표, 워재료 리스트, 제조사 정보는 인접하게 한 면에 표기, 그 사이 불필요한 정보 기재 불가
- 제조사, 유통사, 포장업체의 회사 이름과 주소 기재
- 식이보조식품의 경우, 미국 소비자가 연락 가능한 '미국 주소' 또는 '미국 전화번호' 필수
- 한국에 위치한 제조사를 기재할 경우 해당 제조사 전체 주소를 기재

⑥ 원산지 표기

- 한국에서 제조되었을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기 "PRODUCT OF KOREA"
- ⑦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은 모두 미국 소비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 한 영문으로 표기
- ⑧ 유통기한
 - 'BEST IF USED BY' 용어 사용
- ⑨ 부작용 신고용 전화번호
 -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이보조식품은 심각한 부작용 보고를 위한 미국 주소 또는 전화번호 필수
- ⑩ 한국 식약처 기준 표기사항
 -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은 미국 소비자 대상 판매 시 오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 권고
- ① 건강 기능 주장
 - 제품이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표현 가능
 - 질병의 치유, 치료, 예방 효과 암시는 불가능
 - 기능 강조표기 시 식품의약국(FDA) 규정 준수 필요
 - 1)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잘못된 정보여서는 안됨
 - 2) 제조사는 해당 표기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들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3) 제품에 강조표기를 하고 30일 안으로 식품의약국(FDA)에 표기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 4) 기능 강조표기에는 식품의약국(FDA) 면책문구 필수 포함해야 하며 강조표기 바로 하단에 면책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고, 강조표기마다 "*" 를 윗 첨자로 기재하고 하단에 면책문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표기할 수도 있음
 - 5) 식품의약국(FDA) 면책문구: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② 캘리포니주 유해물질 경고법(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주의 '식수안전 및 유해물질 관리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에 따른 경고문 표기 필요 여부 확인
- 유해물질(납, 카드뮴, 비소, 수은, 아크릴아미드 등) 함유 시 경고문 필수

♪ 자문 결과

- 미국 식이보조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맞는 라벨링이 필수적이며, 특히 제품 전면표기면에는 반드시 제품군 특성과 순중량 표기가 규정에 맞게 표기되어야 함
-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정확한 함량 표기와 영양성분표는 영양성분표 양식을 준수해야 함
- 기능성 강조표기를 할 경우 식품의약국(FDA)의 면책문구를 반드시 포함하고, 제품 출시 후 30일 이내에 FDA에 신고해야 함
- 국영문이 혼용된 포장재의 경우, 모든 필수 표기사항을 국영문 병기해야 하나, 이것이 어려움 경우 영문으로만 포장재를 제작하는 것이 권장됨
- 표시사항 및 라벨링이 식품의약국(FDA)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수입 통관 과정에서 제품 반송이나 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